

③ 불용품 결정 물품 중 매각 처분이 가능한 물품을 매각하여 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4조(물품 관리대장 비치) 물품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부식 수불부
2. 비품(보통재산)대장
3. 차량대장
4. 도서목록 대장
5. 후원금 대장
6. 소모품 수불부(연료, 약품 등 일체)
7.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것

제8장 입소자 및 이용자

제105조(입소 및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는 1 ~ 2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등급이더라도 공단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1 ~ 3등급으로 한다.

제106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의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2. 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26명 이내로 한다.

제107조(모집방법) 입소자 및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08조(계약)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주(야)간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변경 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전염성 질환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

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0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10조(입소 또는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 별첨2, 별첨3, 별첨4 와 같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주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 1)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2)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일체의 필요한 자료를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
 - 4) 주소의 변경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6)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7)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신병을 인수하여 장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이를 거절할 경우 시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병을 처리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자 또는 보건자로 판정되었을 때
- 3) 입소자가 2회 이상 이용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

- 4)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 장애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

제 1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수가가준이 변경되거나 입소자의 본인부담비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지동 적용하며 그 내용을 입소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이용료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2. 비급여비용을 인상할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 등의를 얻어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어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본 시설의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설은 노인성 질환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장.단기적으로 모셔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신체활동 지원
- 2) 기능회복훈련
- 3) 간호 및 처치
- 4) 치매관리 지원
- 5) 응급상황 지원
- 6) 기타 일상생활 지원

2. 본 시설의 운영비용은 비영리 및 무료(또는 실비) 복지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자(등급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장기요양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가 고시 금액
- 2) 등급외자 : 보건복지부 권장 입소비용에 준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3) 비급여비용 : 식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

제113조(입소 또는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입소자 등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115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116조(급여)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3. 영양관리서비스
4. 치매관리지원서비스
5.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6.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7. 기타 여가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송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61조 내지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8조(면책) ① 제6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1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외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 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 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0조(의료급여의 제공) ① 시설은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족탁의 또는 협력의 로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시설물 등의 사용) ①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신중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입소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

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기에 따른 현금 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입소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3조의1(계약의 정지) 제71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4조(사망) 입소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②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제125조(건강진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6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7조(생활지도) 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나 이용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시설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장 재물관리